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호	15672
-------------	-------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·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,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(안 제41조 등).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7호 중 “제41조제2항을”을 “제41조제3항을”로 한다.

제21조의11제1항제8호 중 “제41조제2항을”을 “제41조제3항을”로 한다.

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2항 및 제3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2항 및 제3항에”로, “방법”을 “시기 · 방법”으로 한다.

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.

제69조의5제1항제6호 중 “제41조제2항을”을 “제41조제3항을”로 한다.

제79조제3항제15호 중 “제41조제2항에”를 “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운전면허의 취소 · 정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	제20조(운전면허의 취소 · 정지 등) ① -----
1. ~ 6. (생 략)	-----
7. <u>제41조제2항</u> 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	-----
8. (생 략)	-----
② ~ ⑥ (생 략)	-----
제21조의11(관제자격증명의 취소 · 정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제21조의11(관제자격증명의 취소 · 정지 등) ① -----

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• 2. (생략)

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의5(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·정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⑤ 제2항 및 제3항에 -----
시기 · 방법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41조 제3항을 -----

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· ③ (생략) 제79조(별 칙) ① · 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14. (생략) 15. <u>제41조제2항에</u>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. ~ 19. (생략) ④ · ⑤ (생략)	----- -----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79조(별 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<u>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</u> ----- ----- 16. ~ 19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